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 2023-1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공시 의무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하며,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업 시,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 출자를 허용하여 창투사와 신기사간 형평성 조절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가 의무공시하여야 하는 전문보육 현황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신설)

보육과정명·보육기간·보육과정 내용·보육대상자 규모 등 명시

나. 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 출자 허용(안 제17조제3호 신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업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소유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제17조제4호로 하고,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3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가.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나. 제16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문보육과정명
2. 전문보육과정의 운영기간
3. 전문보육과정의 내용
4. 전문보육과정의 대상자 규모

부 칙

이 영은 2023. 3. 21.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p> <p>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 2. (생략)</p> <p><신설></p>	<p>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u></p> <p>가. <u>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u></p> <p>나. <u>제16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u></p>
<p>3.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
한 전문보육 현황” 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문보육과정명
2. 전문보육과정의 운영기간
3. 전문보육과정의 내용
4. 전문보육과정의 대상자 규모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연 락 처	(044) 204 - 7726